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- 279호

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승인, 지형도면 등의 고시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995호(2016.12.30.)로 지구지정된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지정 변경(2차)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용인시 도시재생과(031-324-3297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(031-250-827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4년 5월 2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□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가. 명 칭 :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나. 위 치 :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· 청덕동 일원

다. 면 적 : 904,921m²

2. 촉진지구의 지정일 (변경없음) : 관보게재일[2016년 12월 30일]

3. 사업의 종류 (변경없음)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)

가. 명 칭 (변경없음)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나. 소재지 (변경없음)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다. 대표자 성명 (변경)

- 기 정 : 김 현 준

- 변 경 : 이 한 준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(변경없음) : [붙임2]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	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· 청덕동 일원	904,921	-	904,921	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995호 (‘16.12.30.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□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

가. 사업의 명칭 :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

나. 위 치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, 청덕동 일원

다. 면 적 : 904,921m²

라. 계획의 목적
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, 청년 · 신혼부부 ·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

가. 명 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나. 소재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
다. 대표자 성명 : 이 한 준

3.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

가. 사업기간 : 2016. 12. 30. (지구지정 고시일) ~ 2028. 12. 31. (준공 예정일)

나. 재원조달 계획 :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총 계			904,921	100.0	—
주택 건설 용지	합 계		337,176	37.2	—
	단독주택	소 계	35,764	3.9	—
		일반형(점포겸용)	3,841	0.4	—
		블록형	31,923	3.5	—
	공동주택	소 계	273,462	30.2	—
		공공지원민간임대	138,258	15.3	—
		일반분양	135,204	14.9	—
	주상복합(일반분양)		12,591	1.4	주거:상업=80:20
	근린생활시설		15,359	1.7	—
판매 업무 시설 용지	합 계		60,548	6.6	—
	상업용지		7,578	0.8	—
	준주거용지		4,956	0.5	—
	도시지원시설용지		48,014	5.3	—
기반 시설 용지	합 계		507,197	56.2	—
	공원 녹지	소 계	380,785	42.2	—
		공원	92,179	10.2	4개소 (저류시설 2개소 포함)
		문화공원	90,011	9.9	—
		경관녹지	194,405	21.6	7개소
		공공공지	4,190	0.5	9개소
	학교		27,774	3.1	2개소
	주차장		5,701	0.6	3개소
	도로	소 계	92,937	10.3	20개 노선
		도로	89,398	9.9	15개 노선
		보행자전용도로	3,539	0.4	5개 노선

5. 개략설계도서 : 게재생략

6. 인구·주택 수용계획

가. 계획인구 : 14,698인(호당 2.7인 기준)

나. 주택건설계획 : 5,447호(단독주택 175호, 공동주택 4,891호, 주상복합 381호)

구 분	면 적(㎡)	건설호수(호)	수용인구(인)	비 고
합 계	321,817	5,447	14,698	
단 독 주 택	35,764	175	472	
일반형(점포겸용)	3,841	16	43	
블 록 형	31,923	159	429	
공 동 주 택	273,462	4,891	13,200	
60㎡ 이하	117,691	2,549	6,880	
60㎡~85㎡	129,771	2,008	5,419	
85㎡ 초과	26,000	334	901	
주 상 복 합	12,591	381	1,026	주거:상업=80%:20%
60㎡~85㎡	8,400	274	738	
85㎡ 초과	4,191	107	288	

1) 단독주택용지계획

구 분	면적(㎡)	건설호수(호)	수용인구(인)	비 고
합 계	35,764	175	472	
일반형(점포겸용)	3,841	16	43	
블록형	31,923	159	429	

2) 공동주택용지계획(주상복합 포함)

블록	구 분	면적 ^{주1)} (㎡)	평균주택 규모 ^{주1)} (㎡)	건설호수 (호)	구성비 (%)	수용인구 (인)	용적률 ^{주1)} (%)	비 고	
합 계		286,053	—	5,272	100.0	14,226	—	—	
A1	60㎡이하	5,025	80	113	2.2	305	180	공공 지원 민간 임대	특별공급
	60㎡~85㎡	15,398	105	263	5.0	710			일반공급
A2	60㎡이하	16,300	80	369	7.0	996	180		특별공급
	60㎡이하	25,548	80	578	11.0	1,560			일반공급
	60㎡~85㎡	16,200	105	277	5.3	747			일반공급
A3	60㎡이하	16,800	80	338	6.4	912	160		특별공급
	60㎡이하	26,987	80	543	10.3	1,466			일반공급
	60㎡~85㎡	16,000	105	243	4.6	656			일반공급
B1	60㎡~85㎡	8,400	110	274	5.2	738	360 ^{주2)}	일반분양 (주상복합)	
	85㎡초과	4,191	140	107	2.0	288			
B2	60㎡~85㎡	38,765	80	634	12.0	1,711	180	일반분양	
	85㎡초과	26,000	110	334	6.3	901			
B3	60㎡이하	27,031	80	608	11.5	1,641	180	일반분양	
B4	60㎡~85㎡	43,408	110	591	11.2	1,595	150	일반분양	

주1) 대지면적, 평균주택규모, 용적률은 주택유형별·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

주2) B1블록의 용적률은 450% 이하로 계획하였으나, 주거공급비율(주거:상업=80:20)을 고려하여 360% 적용하여 세대 수 산정

7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류 별	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	
	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
합계		기정	1	11	91	—	—	—	1	11	91	—	—	—
		변경	20	4,880	92,937	5	1,741	31,146	7	2,469	57,307	8	670	4,484
일반 도로	소계	기정	1	11	91	—	—	—	1	11	91	—	—	—
		변경	15	4,290	89,398	5	1,741	31,146	7	2,469	57,307	3	80	945
	대로	기정	1	11	91	—	—	—	1	11	91	—	—	—
		변경	2	1,444	42,893	—	—	—	2	1,444	42,893	—	—	—
	중로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8	2,045	38,884	3	1,225	25,898	3	769	12,234	2	51	752
	소로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5	801	7621	2	516	5,248	2	256	2,180	1	29	193
특수 도로	소계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5	590	3,539	—	—	—	—	—	—	5	590	3,539
	소로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5	590	3,539	—	—	—	—	—	—	5	590	3,539

2) 주차장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계	—	3개소	5,701	
주차장	1	언남동 산30 일원	3,402	노외주차장
	2	청덕동 357-1 일원	1,350	
	3	언남동 145 일원	949	

나. 공간시설

1) 공원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계	—	5개소	182,190	
문화공원	1	언남동 83-23 일원	90,011	용인시 공공기여
근린공원	1	언남동 산 44-2 일원	60,885	
	2	언남동 54 일원	14,454	저류시설 1개소(5,484㎡) 포함
소 공 원	1	청덕동 377 일원	7,681	저류시설 1개소(3,827㎡) 포함
	2	언남동 산 40-1 일원	9,159	

2) 녹지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계	—	7개소	194,405	
경관녹지	1	언남동 산32-5 일원	78,434	
	2	언남동 산43-2 일원	100,547	
	3	청덕동 381-1 일원	206	
	4	청덕동 370-1 일원	3,483	
	5	청덕동 산40-1 일원	5,330	
	6	청덕동 산40-6 일원	2,418	
	7	청덕동 산521 일원	3,987	

3) 공공공지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—	9개소	4,190	
공공공지	1	언남동 145 일원	564	
	2	언남동 149 일원	289	
	3	언남동 143-1 일원	135	
	4	언남동 143-1 일원	391	
	5	언남동 140-6 일원	651	
	6	언남동 142-2 일원	780	
	7	언남동 46 일원	537	
	8	언남동 44 일원	541	
	9	언남동 44 일원	302	

다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1) 학교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—	2개소	27,774	
초등학교	1	청덕동 산 40-6 일원	12,640	
고등학교	1	언남동 124-2 일원	15,134	

라. 방재시설

1) 우수지

구 분	번호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계	—	2개소	9,311	
저류시설	1	언남동 54 일원	5,484	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
	2	청덕동 377 일원	3,827	소공원1 내 중복결정

8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
가. 환경보전계획

- 녹지축이 형성된 주요산림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원형으로 존치하고, 법화산 자락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확보하여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
-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

나.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

- 사업대상지 남측 산림이 양호한 구릉지를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로 계획하여 원형 보전

다. 탄소저감계획

- 그린홈(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)을 도입하며 고효율 조명기기,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
- 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에 의거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계획 수립 및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·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)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

-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하고,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해 및 보행·자전거 네트워크를 통한 저탄소·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

9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1] (도면게재생략)

[붙임1]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(변경)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구 분	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	904,921	-	904,921	100.0	
주거 지역	소 계	-	증) 506,797	506,797	56.0	
	전용주거지역	-	증) 37,865	37,865	4.2	
	제2종전용주거지역		증) 37,865	37,865	4.2	
	일반주거지역	-	증) 371,756	371,756	41.1	
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 8,552	8,552	1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63,204	363,204	40.1	
	준주거지역	-	증) 97,176	97,176	10.7	
녹지 지역	소 계	904,921	감) 506,797	398,124	44.0	
	자연녹지지역	904,921	감) 506,797	398,124	44.0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용인시 연남동, 청덕동 일 원	자연녹지 지역	제2종 전용주거지역	37,865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		자연녹지 지역	제1종 일반주거지역	8,552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		자연녹지 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363,204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		자연녹지 지역	준주거지역	97,176	지구단위계획 에 의함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	경기도 용인시 연남동, 청덕동 일원	904,921	-	904,921	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02호 (2021.12.31.)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

■ 도로 총괄표

류 별	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	
	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
합계		기정	1	11	91	—	—	—	1	11	91	—	—	—
		변경	20	4,880	92,937	5	1,741	31,146	7	2,469	57,307	8	670	4,484
일반 도로	소계	기정	1	11	91	—	—	—	1	11	91	—	—	—
		변경	15	4,290	89,398	5	1,741	31,146	7	2,469	57,307	3	80	945
	대로	기정	1	11	91	—	—	—	1	11	91	—	—	—
		변경	2	1,444	42,893	—	—	—	2	1,444	42,893	—	—	—
	중로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8	2,045	38,884	3	1,225	25,898	3	769	12,234	2	51	752
	소로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5	801	7621	2	516	5,248	2	256	2,180	1	29	193
특수 도로	소계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5	590	3,539	—	—	—	—	—	—	5	590	3,539
	소로	기정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		변경	5	590	3,539	—	—	—	—	—	—	5	590	3,539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중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12	30~36	국지도로	310 (11)	중로1-74	제3호대학교	일반도로	—	03.01.22 (경고2003-4)	—
변경	대로	2	12	30~36	국지도로	310 (11)	중로1-74	언남 대로2-1	일반도로	—		—
신설	대로	2	1	30	보조간선도로	1,433	대로2-12	언남 중로1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1	1	20~27	보조간선도로	948	언남 대로2-1	언남 중로1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1	2	18~21	보조간선도로	112	언남 중로1-1	구역계동측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1	3	20	국지도로	165	언남 대로2-1	고등학교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2	1	18	국지도로	78	언남 대로2-1	언남 중로2-3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2	3	15	국지도로	388	언남 대로2-1	언남 대로2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2	4	15	국지도로	303	언남 중로1-1	언남 중로1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3	1	12	국지도로	21	언남 대로2-1	언남 소로1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중로	3	2	12	국지도로	30	언남 대로2-1	언남 소로1-2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1	1	10	국지도로	96	언남 중로3-1	언남1근린공원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1	2	10	국지도로	420	언남 대로2-1	언남 중로2-3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2	1	8	국지도로	188	언남 소로1-1	언남 소로1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2	2	8	국지도로	68	언남 소로1-1	언남 소로2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3	1	6	국지도로	29	구역계서측	언남 소로1-1	일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3	2	6	보행자전용도로	271	언남 중로2-4	경관녹지2	특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3	3	6	보행자전용도로	30	언남 중로1-1	언남 중로2-4	특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3	4	6	보행자전용도로	170	언남 중로1-1	구역계동측	특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3	5	6	보행자전용도로	89	언남 중로1-1	구역계남동측	특수도로	—	—	—
신설	소로	3	6	6	보행자전용도로	30	언남 대로2-1	언남 소로1-2	특수도로	—	—	—

※ ()는 사업부지내 포함 연장

■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 경 전 도 로 명	변 경 후 도 로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2-12	대로2-12	○종점 변경 -제3호대학→언남 대로2-1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종점 변경
-	언남 대로2-1	○신설 -폭원 : 30m, 연장 : 1,433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1-1	○신설 -폭원 : 20~27m, 연장 : 948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1-2	○신설 -폭원 : 18~21m, 연장 : 112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1-3	○신설 -폭원 : 20m, 연장 : 165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2-1	○신설 -폭원 : 18m, 연장 : 78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2-3	○신설 -폭원 : 15m, 연장 : 388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2-4	○신설 -폭원 : 15m, 연장 : 303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3-1	○신설 -폭원 : 12m, 연장 : 21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중로3-2	○신설 -폭원 : 12m, 연장 : 30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1-1	○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96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1-2	○신설 -폭원 : 10m, 연장 : 420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2-1	○신설 -폭원 : 8m, 연장 : 188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2-2	○신설 -폭원 : 8m, 연장 : 68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3-1	○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29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3-2	○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271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3-3	○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30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3-4	○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170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3-5	○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89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-	언남 소로3-6	○신설 -폭원 : 6m, 연장 : 30m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
2) 공간시설

가) 공원

■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5개소	—	증) 182,190	182,190	—	—
신설	1	주계공원	문화공원	언남동 83-23 일원	—	증) 90,011	90,011	—	—
신설	1	생활권공원	근린공원	언남동 산44-2 일원	—	증) 60,885	60,885	—	—
신설	2	생활권공원	근린공원	언남동 산49-2 일원	—	증) 14,454	14,454	—	저류지1 (5,484㎡) 중복결정
신설	1	생활권공원	소공원	청덕동 377 일원	—	증) 7,681	7,681	—	저류지2 (3,827㎡) 중복결정
신설	2	생활권공원	소공원	청덕동 산40-1 일원	—	증) 9,159	9,159	—	—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문화공원	○신설 -위치 : 언남동 83-23 일원 -면적 : 90,011m ²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1	근린공원	○신설 -위치 : 언남동 산44-2 일원 -면적 : 60,885m ²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2	근린공원	○신설 -위치 : 언남동 산49-2 일원 -면적 : 14,454m ²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1	소공원	○신설 -위치 : 청덕동 377 일원 -면적 : 7,681m ²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2	소공원	○신설 -위치 : 청덕동 산40-1 일원 -면적 : 9,159m ²	○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
나) 녹지

■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시 표 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7개소	—	증) 194,405	194,405		
신설	1	녹지	경관녹지	언남동 산32-5 일원	—	증) 78,434	78,434	—	
신설	2	녹지	경관녹지	언남동 산43-2 일원	—	증) 100,547	100,547	—	
신설	3	녹지	경관녹지	청덕동 381-1 일원	—	증) 206	206	—	
신설	4	녹지	경관녹지	청덕동 370-1 일원	—	증) 3,483	3,483	—	
신설	5	녹지	경관녹지	청덕동 산40-1 일원	—	증) 5,330	5,330	—	
신설	6	녹지	경관녹지	청덕동 산40-6 일원	—	증) 2,418	2,418	—	
신설	7	녹지	경관녹지	청덕동 산521 일원	—	증) 3,987	3,987	—	

■ 녹지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 (종류)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산32-5 일원 - 면적 : 78,434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2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산43-2 일원 - 면적 : 100,547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3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산381-1 일원 - 면적 : 206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4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370-1 일원 - 면적 : 3,483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5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산40-1 일원 - 면적 : 5,330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6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산40-6 일원 - 면적 : 2,418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7	녹지 (경관녹지)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산521 일원 - 면적 : 3,987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
다) 공공공지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 면 표 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 정 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9개소	—	증) 4,190	4,190	—	—
신설	1	공공공지	언남동 145 일원	—	증) 564	564	—	—
신설	2	공공공지	언남동 149 일원	—	증) 289	289	—	—
신설	3	공공공지	언남동 143-1 일원	—	증) 135	135	—	—
신설	4	공공공지	언남동 143-1 일원	—	증) 391	391	—	—
신설	5	공공공지	언남동 140-6 일원	—	증) 651	651	—	—
신설	6	공공공지	언남동 142-2 일원	—	증) 780	780	—	—
신설	7	공공공지	언남동 46 일원	—	증) 537	537	—	—
신설	8	공공공지	언남동 44 일원	—	증) 541	541	—	—
신설	9	공공공지	언남동 44 일원	—	증) 302	302	—	—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 (종류)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145 일원 - 면적 : 564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2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149 일원 - 면적 : 289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3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언남동 143-1 일원 - 면적 : 135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4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언남동 143-1 일원 - 면적 : 391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5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언남동 140-6 일원 - 면적 : 651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6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언남동 142-2 일원 - 면적 : 780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7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46 일원 - 면적 : 537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8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44 일원 - 면적 : 541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9	공공공지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44 일원 - 면적 : 302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
3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가) 학교

■ 학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 면 표 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－	－	증) 27,774	27,774	－	
신설	1	학교	초등학교	청덕동 산40-6일원	－	증) 12,640	12,640	－	
신설	1	학교	고등학교	언남동 산124-2일원	－	증) 15,134	15,134	－	

■ 학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 (종류)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초등학교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산40-6 일원 - 면적 : 12,640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1	고등학교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산124-2 일원 - 면적 : 15,134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
4) 방재시설

가) 유수지

■ 유수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	—	—	증) 9,311	9,311	—	
신설	1	유수지	저류시설	언남동 54 일원	—	증) 5,484	5,484	—	언남2근린공원 중복결정
신설	2	유수지	저류시설	청덕동 377 일원	—	증) 3,827	3,827	—	언남1소공원 중복결정

■ 유수지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 (종류)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유수지 (저류시설)	○ 신설 - 위치 : 언남동 54 일원 - 면적 : 5,484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2	유수지 (저류시설)	○ 신설 - 위치 : 청덕동 377 일원 - 면적 : 3,827㎡	○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

라.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단독주택용지

1) 일반형(점포겸용) 단독주택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3,841	—	3,841	
C	C1	956	1	232	
			2	235	
			3	242	
			4	247	
	C2	1,476	1	231	
			2	269	
			3	270	
			4	234	
			5	250	
			6	222	
	C3	1,409	1	243	
			2	244	
			3	204	
			4	251	
			5	238	
			6	229	

※ 원칙적으로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,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

※ 합병은 연결한 1개의 획지내에서 1회 허용하며, 합병에 따른 획지당 가구수의 증가는 없음

2) 블록형 단독주택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31,923	—	31,923	
D	D1	11,291	1	11,291	
	D2	20,632	1	20,632	

※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시, 분할가능면적은 해당용지 내에 진입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일괄조성 후 남은 면적 중 독립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함.

※ 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140m²이상 660m²이하로 한다.

나) 공동주택용지(아파트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273,462	—	273,462	
A	A1	20,423	—	20,423	
	A2	58,048	—	58,048	
	A3	59,787	—	59,787	
B	B2	64,765	—	64,765	
	B3	27,031	—	27,031	
	B4	43,408	—	43,408	

※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,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제외)

다) 주상복합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12,591	—	12,591	
B	B1	12,591		12,591	

※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획지의 분할 가능

라) 근린생활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15,359	—	15,359	
SR	SR1	4,363	1	845	
			2	891	
			3	891	
			4	891	
			5	845	
	SR2	4,635	1	891	
			2	936	
			3	936	
			4	936	
			5	936	
	SR3	2,515	1	838	
			2	838	
			3	839	
	SR4	2,613	1	871	
			2	871	
			3	871	
	SR5	1,233	1	550	
			2	683	

※ 원칙적으로 획지의 분할은 불가, 합병은 연접한 1개의 획지내에서 1회 허용

마) 준주거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4,956	—	4,956	
N	N1	4,956	1	2,478	
			2	2,478	

※ 원칙적으로 획지의 분할은 불가, 합병은 연접한 1개의 획지내에서 1회 허용

바) 상업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7,578	—	7,578	
S	S1	5,728	1	1,505	
			2	1,420	
			3	1,406	
			4	1,397	
	S2	1,850	1	1,850	

※ 원칙적으로 획지의 분할은 불가, 합병은 연접한 1개의 획지내에서 1회 허용

사) 도시지원시설 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총계	—	48,014	—	48,014	
지원	지원1	48,014	1	48,014	

※ 원칙적으로 획지의 분할은 불가

아) 교육시설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계	—	27,774	—	27,774	
E	E1	12,640	—	12,640	초등학교
	E2	15,134	—	15,134	고등학교

※ 원칙적으로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불가

자) 주차장용지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m ²)	
계	—	5,701	—	5,701	
P	P1	3,402	—	3,402	
	P2	1,350	—	1,350	
	P3	949	—	949	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) 단독주택용지

1) 일반형(점포겸용) 단독주택용지 (제1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—	C1 ~ C3	용도	허용용도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－ 제1호 단독주택 (다중주택, 공관은 제외) －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, 총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전기자동차 충전소, 고시원업 제외) ※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 40%이내, 지상1층 이하에 한함
			불허용도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 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 ○ 60% 이하
			용적률 ○ 200% 이하
			높이 ○ 4층 이하
		1획지당 가구수	○ 5가구 이하(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C1 ~ C3	배치	배치 ○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.
			건축선 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. ○ 점포주택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,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 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건축물 옥상층 부속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. -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,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○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 일부에 평지붕이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,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. - 평지붕 면적의 30% 이상을 옥상녹화 한다. ○ 점포주택의 경우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 이하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2)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(제2종전용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D1, D2	용도	허용용도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호 단독주택 (다중주택, 공관 제외) ※ 단독주택은 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의 “단독형 집합주택” 포함 - 제2호 공동주택(3층이하, 아파트, 기숙사 제외)
			불허용도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 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 ○ 50% 이하
			용적률 ○ 100% 이하
			높이 ○ 3층 이하
		1획지당 가구수	○ 3가구 이하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획내용
-	D1, D2	배치	배치	○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 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.
			건축선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	○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.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건축물 옥상층 부속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. -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,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○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 일부에 평지붕이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,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. - 평지붕 면적의 30% 이상을 옥상녹화 한다. ○ 점포주택의 경우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 이하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나) 공동주택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획내용
-	A1~A3 B2~B4	용도	허용용도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(단,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주택 제외) -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※ 근린생활시설·소매시장·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 미만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시도시계획조례」 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30% 이하
			용적률	○ 150~180% 이하
			높이	○ 아파트 : 15~20층 이하
		주택규모 및 세대수		○ [별표1]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내용
-	A1~A3 B2~B4	배치	○ 직각 배치구간 (A1,A2,B2,B3) -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하기 위하여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. -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탑상형 배치구간 (A3) - 다양한 단지경관의 연출과 단지 내 외부공간의 개방감확보를 위해 탑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. - 탑상형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개방지수 확보구간 (A3) - 단지내 개방감 확보 및 인접주거지역에 일조 등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방지수 확보구간을 지정한다. - 개방지수 확보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저층배치구간 (A3) - 단지내 공원녹지 및 가로경관과의 조화, 통경축의 형성 등을 위하여 저층(10층이하) 배치구간을 지정한다. - 저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씬지형공지 (A1,A2,B2,B3) - 인접한 공원, 녹지,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씬지형공지를 조성하며, 조성방식은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한다. - 씬지형공지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. ○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.
		건축선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 조례」 별표2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건축물 1동의 길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 - 주거동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,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경우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 중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. -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가 6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. ○ 건축물 주거동에 관한 사항은 각 호를 따른다. -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. - 주동은 판상형,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, 계단식 판상형, 연도형, 연도형과 탑상형,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. ○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,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 ○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○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 이하(보행자전용도로 1m)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<별표1> 공동주택용지의 규모·용적률·세대수·높이

필지 번호	주택유형	대지면적 (㎡)	세대수 (호)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최고층수 (층이하)	비고	
A1	60㎡이하	5,025	113	30	180	20	공공지원 민간임대	특별공급
	60㎡~85㎡	15,398	263					일반공급
A2	60㎡이하	16,300	369	30	180	20	공공지원 민간임대	특별공급
	60㎡이하	25,548	578					일반공급
	60㎡~85㎡	16,200	277					일반공급
A3	60㎡이하	16,800	338	30	160	18	공공지원 민간임대	특별공급
	60㎡이하	26,987	543					일반공급
	60㎡~85㎡	16,000	243					일반공급
B2	60㎡이하	38,765	634	30	180	20	일반분양	
	60㎡~85㎡	26,000	334					
B3	60㎡이하	27,031	608	30	180	20	일반분양	
B4	60㎡~85㎡	43,408	591	30	150	15 (해발고도 180.34m이하)	일반분양	

다) 주상복합용지(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B1	용도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2호 공동주택 -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※ 주거용도의 비율은 80%이상으로 한다.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충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시설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(체육관, 운동장,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중 주거형 오피스텔 제외) ※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불허 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
		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규모	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 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	○ 50% 이하
			○ 450% 이하 (주거:360%, 비주거 90%)
			○ 15층(건축물 높이 55m) 이하
		주택규모 및 세대수	○ <별표2>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-	B1	배치	○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. -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- 상기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경우 1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. ○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한다.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건축선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주거동의 경우 형태는 탑상형(타워형)을 권장한다. ○ 건축물 1동의 길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 - 주거동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,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경우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 중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. -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가 6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. ○ 건축물 주거동에 관한 사항은 각 호를 따른다. -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. - 주동은 판상형, 탑상형을 기준으로 하되, 계단식 판상형, 연도형, 연도형과 탑상형, 탑상형과 판상형의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. ○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,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 ○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○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 이하(보행자전용도로 1m)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<별표2> 주상복합용지의 규모·용적률·세대수·높이

필지 번호	주택유형	대지면적 (㎡)	세대수 (호)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최고층수 (층이하)	비고
B1	60㎡~85㎡	8,400	274	50	450	15	일반분양
	85㎡초과	4,191	107		·주 거:360 ·비주거: 90	(건축물 높이 55m) 이하	

라) 근린생활시설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-	SR1 ~ SR5	용도	허용용도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충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
			불허용도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 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 ○ 60% 이하
			용적률 ○ 240% 이하
			높이 ○ 5층(건축물 높이 20m) 이하
		배치	배치 ○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. -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- 상기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경우 1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. ○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한다.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 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“용인시 건축 조례”별표2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외벽의 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-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. ○ 전면도로에 면한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, 서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건축물 옥상층 부속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. -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,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○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이하(공원 및 녹지, 보행자전용도로 1m)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마) 준주거시설용지(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N1	용도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충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설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, 집회장 - 제7호 판매시설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(옥답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체육관, 운동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중 주거형 오피스텔 제외) ※ 업무시설은 부수용도로 연면적의 40%미만으로 하여야 하며, 업무전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불허
		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 ○70% 이하
			용적률 ○450% 이하
			높이 ○7층(건축물 높이 27m) 이하
		배치	○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. -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- 상기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경우 1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. ○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한다.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 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전면도로에 면한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,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건축물 옥상층 부속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. -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,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○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이하(공원 및 녹지, 보행자전용도로 1m)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V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II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V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바) 상업시설용지(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S1, S2	용도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총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, 집회장 - 제6호 의거한 종교시설(불안당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 -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소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- 제11호 노유자시설 - 제12호 수련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(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체육관, 운동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 ※ 업무시설은 부수용도로 연면적의 40%미만으로 하여야 하며, 업무전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불허 - 제20호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전신전화국, 촬영소 등
		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규모	○ 70% 이하
			○ 450% 이하
			○ 10층(건축물 높이 38m) 이하
		배치	○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. -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- 상기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경우 1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. ○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한다.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전면도로에 면한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,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건축물 옥상층 부속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. -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,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○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이하(공원 및 녹지, 보행자전용도로 1m)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내용
-	S1, S2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사) 도시지원시설용지(준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내용
-	지원1	용도	■ 주용도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산업집적기반시설 (물류시설 제외), 지식산업센터(공장 제외) ○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○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회의장, 전시장 -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,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 - 제14호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, 전신전화국, 데이터센터 (단, 데이터센터는 사용시설(전력,통신,상수도 등)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) ■ 부용도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2호 공동주택용지 중 기숙사(분양형태의 기숙사 제외)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장의사, 옥외설치 골프장, 고시원업의 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- 제13호 운동시설(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※ 부용도는 연면적의 30%미만으로 하여야 한다. ※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연면적의 15%이하 입지 가능 (단,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[공공업무 수행시설], 사목[주민공동 이용 시설], 자목[바닥면적 합계 30㎡미만 일반업무시설] 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[바닥면적 합계 500㎡미만 일반업무시설]의 시설은 제외) ※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한 단,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,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% 미만으로 하여야 함
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○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용인시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○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[별표1의3]에 따른 1~4종 사업장, [별표2]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,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2]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		규모	- 건폐율 ○ 70% 이하 - 용적률 ○ 350% 이하 - 높이 ○ 15층(건축물 높이 55m) 이하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
-	지원1	배치	배치	○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. - 1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-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- 상기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경우 1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. ○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,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한다.(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) ○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「건축법」 및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.
			건축선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	○ 전면도로에 면한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,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. 다만,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건축물 옥상층 부속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. -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:1~1:3의 범위의 박공형식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. -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여, 인접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, 실용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○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높이는 1.2m이하(공원 및 녹지, 보행자전용도로 1m)로 하여야 하며, 재료,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.
		기타	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아) 교육시설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
-	E1, E2	용도	허용용도	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-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 설립·운영규정에 의한 학교,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
			불허용도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규모	건폐율	○ 60% 이하
			용적률	○ 240% 이하
			높이	○ 5층 이하
		배치	배치	○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 등은 남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. ○ 학교시설은 환경영향평가·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. ○ 교육시설은 생활권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한다. ○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. ○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-	E1, E2	배치 건축선	○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. ○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용인시 건축 조례」 별표2 (대지 안의 공지 기준)을 따른다.
		형태 및 외관	○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. ○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. ○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(물탱크), 굴뚝, 환기설비 및 시설(환기구 포함),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(방송·통신용 안테나 제외) ○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 ○ 옥상층의 부대시설(옥탑, 철탑, 계단탑 등)의 높이는 4.5m를 초과할 수 없다. ○ 공공시설용지내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장설치가 가능하다. - 유치원 및 교육시설 등 어린이,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- 전기공급설비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안전을 위한 경우 - 존치시설물 및 기타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○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, 1.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		기타	○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‘색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 ○ 옥외광고물(간판)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‘옥외광고물계획’을 따른다. ○ 건축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8장 ‘야간경관계획’을 따른다.

자) 주차장용지(준주거지역/제2종일반주거지역/제1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-	P1 ~ P3	용도 허용 용도	P1 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 용도)에 한함(오피스텔 제외).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조의 2 제1항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 적용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총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
			P2,P3 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 용도)에 한함(오피스텔 제외).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조의 2 제1항(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) 적용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(총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제조업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 -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

3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단독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																					
-	C1~C3, D1,D2	대지 내 공지	○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3조 (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○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		교통처리	○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 ○차량의 출입구는 1개소만 허용하며, 그 폭원은 8m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와 점포겸용 주택은 예외로 한다. ○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.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.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. ○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
		주차장 설치기준	○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 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점포주택의 경우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합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,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(투수성 포장)의 사용을 권장하며(단,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),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 한다. ○주차장에는 입주기업·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여,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○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,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. 특히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	D1,D2	획지의 분할 및 합병	○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시, 분할가능면적은 해당용지 내에 진입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일괄조성 후 남은 면적 중 독립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한다. ○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140㎡이상 660㎡이하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		수용 세대수	○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. <table><tr><th>필지 번호</th><th>주택규모</th><th>대지면적 (㎡)</th><th>세대수 (호)</th><th>건폐율 (%이하)</th><th>용적률 (%이하)</th><th>최고층수 (층이하)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D1</td><td>200㎡</td><td>11,291</td><td>56</td><td>50%</td><td>100%</td><td>3</td><td></td></tr><tr><td>D2</td><td>200㎡</td><td>20,632</td><td>103</td><td>50%</td><td>100%</td><td>3</td><td></td></tr></table> ○필지의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세대수는 당초 분할 및 합병하기 이전의 블록별 계획 세대수의 증감기준을 적용한다. ○블록 단위 수용세대수가 “주택법 시행령 제27조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.	필지 번호	주택규모	대지면적 (㎡)	세대수 (호)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최고층수 (층이하)	비고	D1	200㎡	11,291	56	50%	100%	3		D2	200㎡	20,632	103	50%	100%
필지 번호	주택규모	대지면적 (㎡)	세대수 (호)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최고층수 (층이하)	비고																		
D1	200㎡	11,291	56	50%	100%	3																			
D2	200㎡	20,632	103	50%	100%	3																			

나) 공동주택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A1~ A3, B2~ B4	대지 내 공지	○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1.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며, 그 외의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의 제①항 (전면공지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○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장 제13조 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○ 공공조경에 관한 사항은 각 호에 따른다. -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3조의 제⑤항 (공공조경)의 규정에 따르며, 공원·녹지·산책로·등산로 등과 연계하여 조성한다. -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의2 규정과 용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, 벤치, 조명등,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-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. ○ 결정도에서 쌈지형공지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형공원을 조성하고 인접한 공원, 녹지,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한다. ○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「용인시 건축조례」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, 벤치, 조명등,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한다.
		교통처리	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,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+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한다. ○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. ○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. ○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'보행우선구조'로 조성한다.
		주차장 설치기준	○ 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관련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○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, 투수성포장을 원칙으로 한다. ○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와 차로의 높이는 택배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2.7m 이상으로 한다. 단, 쓰레기집적소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3.3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○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규정에 따른다. ○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A1~ A3, B2~ B4	단지 내 조경	○ 단지 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(휴게시설, 어린이 놀이터, 운동장, 수경시설, 보행광장, 보행전용통로 등)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. ○ 공동주택용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단,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가 곤란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- 전용면적 85㎡ 이하 부분 : 40% 이상(단, 60㎡ 이하 부분은 30% 이상) - 전용면적 85㎡ 초과 부분 : 50% 이상 - 주택유형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 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. ○ 공동주택용지에 면한 간선도로변, 공원, 학교소음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음벽 또는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. ○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, 공원·녹지와 연결한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연계시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. ○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 ○ 단지 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를 통해 식재토록 한다.
		실외기, 쓰레기 적치장 등의 설치	○ 실외기 및 쓰레기적치장 등은 도시미관 증진과 이용자의 생활환경여건 제고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(지하층)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 ○ 실외기는 가로환경, 미관, 소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 - 주 보행동선에서 차폐 및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- 설치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개별 세대 및 호실 내 또는 지하층 등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옥상층의 경우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 옥상층에 설치를 하려는 경우 옥상 휴게공간 등 다른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. - 실외기에 부착되는 배관 및 부수장치가 건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.

다) 주상복합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B1	대지 내 공지	○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1.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며, 그 외의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의 제①항(전면공지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
		교통처리	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,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+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B1	주차장 설치기준	○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 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 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주거용도의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,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○주거이외 용도의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. ○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,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. ○지하주차장의 경사로와 차로의 높이는 택배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2.7m 이상으로 한다. 단, 쓰레기집적소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3.3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○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의 규정에 따른다. ○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		실외기, 쓰레기 적치장 등의 설치	○실외기 및 쓰레기적치장 등은 도시미관 증진과 이용자의 생활환경여건 제고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(지하층)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 ○실외기는 가로환경, 미관, 소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 - 주 보행동선에서 차폐 및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- 설치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개별 세대 및 호실 내 또는 지하층 등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옥상층의 경우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 옥상층에 설치를 하려는 경우 옥상 휴게공간 등 다른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. -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 및 부수장치가 건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쓰레기적치장 및 분리수거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.
		기타사항	○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승인권자(허가권자)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라) 근린생활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SR1 ~ SR5	대지 내 공지	○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(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○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.
		생활가로변 녹지띠	○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녹지띠를 조성하여야 한다. - 녹지띠는 생활가로를 향한 건축물 벽면에 접하여 조성한다. 이때, 녹지띠를 전면공지에 조성할 수 있다. - 녹지띠의 폭은 경계석을 포함하여 50c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 - 건축물 출입구 등 녹지띠 조성으로 통행이 불편해지는 곳은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. - 녹지띠에는 잔디, 초화류 등을 식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SR1 ~ SR5	교통처리	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 ○ 차량의 출입구는 인접필지와 연결하여 조성토록 권장한다. ○ 연결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.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.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.
		주차장 설치기준	○ 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,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(투수성 포장)의 사용을 권장하고(단,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),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주차장에는 입주기업·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여,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○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,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. 특히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인접획지와 합필, 공동건축 등 개발가능한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인접 대지간 통합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통합지하주차장 설치시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 ○ 협소한 주차장 및 건물 잔출입 환경개선을 위해 인접 획지간 지하에 통합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 시 출구와 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며, 건축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 및 통로의 공동조성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대지는 개별주차 출입구 및 통로를 연결대지와 공동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향후 연결 대지 개발시 공동주차출입구로 사용토록 한다. ○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」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마) 준주거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N1	대지 내 공지	○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(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○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.
		교통처리	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 ○ 연결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.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.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N1	주차장 설치기준	○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 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 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,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(투수성 포장)의 사용을 권장하고(단,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),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주차장에는 입주기업·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,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○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,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. 특히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. ○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바) 상업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S1	대지 내 공지	○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(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○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.
		생활가로변 녹지띠	○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녹지띠를 조성하여야 한다. - 녹지띠는 생활가로를 향한 건축물 벽면에 접하여 조성한다. 이때, 녹지띠를 전면공지에 조성할 수 있다. - 녹지띠의 폭은 경계석을 포함하여 50c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 - 건축물 출입구 등 녹지띠 조성으로 통행이 불편해지는 곳은 조성하지 않을 수 있다. - 녹지띠에는 잔디, 초화류 등을 식재할 수 있으며 녹지공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.
		교통처리	○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 ○차량의 출입구는 인접필지와 연결하여 조성토록 권장한다. ○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.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.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S1	주차장 설치기준	○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,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(투수성 포장)의 사용을 권장하고(단,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),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주차장에는 입주기업·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, 가로변 불법 주차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○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,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. 특히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인접획지와 합필, 공동건축 등 개발가능한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인접 대지간 통합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통합지하주차장 설치시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 ○협소한 주차장 및 건물 진출입 환경개선을 위해 인접 획지간 지하에 통합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 시 출구와 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며, 건축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 및 통로의 공동조성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대지는 개별주차 출입구 및 통로를 연결대지와 공동으로 조성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향후 연결 대지 개발시 공동주차출입구로 사용토록 한다. ○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사) 도시지원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지원1	대지 내 공지	○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(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○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. ○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.
		교통처리	○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,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 ○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.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.9m 이하로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.
		주차장 설치기준	○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, 연접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일체형 또는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지원1	주차장 설치기준	○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,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(투수성 포장)의 사용을 권장하고(단,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),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주차장에는 입주기업·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,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○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,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. 특히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. ○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아) 학교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E1, E2 P1~] P3	대지 내 공지	○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 (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 ○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. ○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.
		교통처리	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. ○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.
		주차장 설치기준	○ 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과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. ○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,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(투수성 포장)의 사용을 권장하고(단,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),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주차장에는 입주기업·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,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○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,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. 특히,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. ○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○ 주차장용지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지주식 주차로 하여야 하며 카리프트 등의 기계식 주차장설치는 불허한다.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
-	E1, E2 P1~] P3	주차장 설치 (주차장용지)	-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)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- 주차장용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전체 주차대수의 50%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 - 주차장용지는"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"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총면적의5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-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%~3%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·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기준은"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"의 규정에 따른다.

마.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바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
사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: 게재생략

※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.

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가.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

- 사업지구 인근 마북변전소에서 공급 예정

나.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

- (주)삼천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예정

다.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

-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

라.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

-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139호)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사용량은 도입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

<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결과 >

구 분	사업지구	도입기준 : B	
		검토기준	비고(판정)
1. 최대열부하(Gcal/h)	25.8	30 이상	부적합
2. 열사용량(Gcal/년)	59,405	45,000 이상	적합
3. 열밀도(Gcal/km ² ·h)	28.5	30 이상	부적합

주1) 수도권 도입기준(A: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, B :인근 10km 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)

주2)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『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-139호』

주3)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(km²)으로 나눈값 임.

3. 방재계획

가. 하천재해 대책

- 사업대상지 내 영구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여 개발로 인한 탄천(지방하천)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

나. 내부 침수재해 대책

- 내수처리방식
 - －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, 강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
- 우수유출 저감
 - －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
 - － 강우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 유도
- 재해저류지 설치
 - －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

다. 비탈면 붕괴 예방

-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

라. 재난 예방대책

- 지진대책
 - －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
 - －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·녹지,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
- 화재 및 산불대책
 - － 공원, 녹지,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·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가. 편입토지조서(총괄표)

구분	합 계		사유지		국공유지		비고
	필지수	면 적(m ²)	필지수	면 적(m ²)	필지수	면 적(m ²)	
계	174	904,921	174	904,921	—	—	
대	47	80,691	47	80,691	—	—	
입	81	640,435	81	640,435	—	—	
학	27	147,778	27	147,778	—	—	공유지분필지 5개 ^{주)} － 경기도 5개(4,963m ²)
천	1	11,249	1	11,249	—	—	
구	13	15,212	13	15,212	—	—	
도	5	9,556	5	9,556	—	—	

주) 사업지구내 공유지분필지 총 5개(공유지분 전체 8,628m², 한국토지주택공사 3,665m², 경기도 4,963m²)

나. 편입토지조서(세부) :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02호(2021.12.31.)로 기고시

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

가.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

○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

구 분	필지수	면 적(m ²)	비 고
계	5	4,963	
학 교	5	4,963	

※ 무상귀속과 관련된 5개 필지는 모두 공유지분(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도) 필지이며, 해당필지의 편입면적(8,628m²) 중 경기도 지분(4,963m²)만 무상귀속대상

※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

○ 소관청별 토지조서

■ 경기도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(m ²)	편입면적(m ²)	무상귀속면적(m ²)	소유자	비고
계				8,628	8,628	4,963	-	
1	언남동	46	학	2,516	2,516	1,845	경기도	
2	언남동	49-1	학	1,768	1,768	1,203	경기도	
3	언남동	49-2	학	1,656	1,656	489	경기도	
4	언남동	50	학	1,339	1,339	275	경기도	
5	언남동	142	학	1,349	1,349	1,151	경기도	

※ 무상귀속과 관련된 5개 필지는 모두 공유지분(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도) 필지이며, 해당필지의 편입면적(8,628m²) 중 경기도 지분(4,963m²)만 무상귀속대상

○ 대체시설(지방자치단체귀속분) 총괄

시설의 구분		개소	연장(m)	면적(m ²)	관리할자	비 고
계		43	4,880	473,722	용인시	-
도 로		20	4,880	92,937	용인시	20개 노선
	대 로	2	1,444	42,893	용인시	-
	중 로	8	2,045	38,884	용인시	-
	소 로	10	1,391	11,160	용인시	보행자도로 5개소 포함
공 원		5	-	182,190	용인시	문화공원 1개소, 근린공원 2개소, 소공원 2개소 (저류시설 2개소 포함)
	문화공원	1	-	90,011	용인시	-
	근린공원	2	-	75,339	용인시	-
	소공원	2	-	16,840	용인시	-
녹 지		7	-	194,405	용인시	7개소 (경관녹지 7개소)
공공공지		9	-	4,190	용인시	9개소
(저류시설)		2	-	(9,311)	용인시	2개소 (공원내 포함)

라.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

- 시행할 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- 시행 방법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-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: 용인시장

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공급용도구분			공급면적 (㎡)	필지수	공급대상자	공급방법	공급가격	공급 시기	비고
주택 건설 용지	단독주택		35,764	5	실수요자 (일반 단독주택용지)	추첨	감정평가액	지구 계획 승인 후	
					실수요자 (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)	경쟁입찰	주거부분 :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: 낙찰가격		
	공동 주택	공공지원 민간임대	138,258	3	실수요자	자격제한	감정평가액		
		일반분양	135,204	3	실수요자	추첨	감정평가액		
	주상복합		12,591	1	실수요자	경쟁입찰	주거부분 :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: 낙찰가격		
	근린생활시설		15,359	5	실수요자	경쟁입찰	낙찰가격		
판매 업무 시설 용지	상업시설		7,578	2	실수요자	경쟁입찰	낙찰가격		
	준주거시설		4,956	1	실수요자	경쟁입찰	낙찰가격		
	도시지원시설		48,014	1	국가·지자체	수의계약	조성원가		
					중소기업진흥공단	수의계약	조성원가 (단, 상업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)		
					기타 실수요자 (관할 지자체장의 추천)	수의계약	감정평가액		
기타 실수요자					추첨	감정평가액			
기반 시설 용지	주차장		5,701	3	국가지자체	수의계약	조성원가		
					실수요자	자격제한	낙찰가격		
	교육 시설	초등학교	12,640	1	국가지자체	수의계약	무상		
		고등학교	15,134	1	국가지자체	수의계약	무상		
합 계			431,119	26	—	—	—	—	

※ 참고 : 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, 「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」

※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.

※ 공공시설용지와 그 밖의 공공시설용지(학교 포함)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한다

※ 공립학교용지는 공공·민간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한다

※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중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한다.

※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% 이상 출자하는 리츠에 우선공급하는 경우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,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,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비주거부분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.

※ 관련 법·규정 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다.

[붙임2]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(변경없음)

연번	구분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권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시	동			공부면적	편집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합계						1,095,809	904,921							
1	기정	기흥구	연남동	33-1	대	4,106	4,10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	기정	기흥구	연남동	44	대	623	62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	기정	기흥구	연남동	44-2	대	920	92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	기정	기흥구	연남동	45-1	대	4,324	4,32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	기정	기흥구	연남동	45-2	대	3,838	3,83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	기정	기흥구	연남동	46	학	2,516	2,51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671 / 2,516				
								경기도		1,845 / 2,516				
7	기정	기흥구	연남동	46-1	임	2,469	2,46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	기정	기흥구	연남동	46-2	학	771	77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	기정	기흥구	연남동	48-1	학	2,292	2,29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	기정	기흥구	연남동	48-3	도	148	14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	기정	기흥구	연남동	49-1	학	1,768	1,76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565 / 1,768				
								경기도		1,203 / 1,768				
12	기정	기흥구	연남동	49-2	학	1,656	1,65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,167 / 1,656				
								경기도		489 / 1,656				
13	기정	기흥구	연남동	50	학	1,339	1,33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,064 / 1,339				
								경기도		275 / 1,339				
14	기정	기흥구	연남동	50-1	임	1,049	1,04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	기정	기흥구	연남동	50-2	임	2,384	2,38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	기정	기흥구	연남동	51	학	426	42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7	기정	기흥구	연남동	52-1	학	92,626	92,62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8	기정	기흥구	연남동	52-2	구	492	49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9	기정	기흥구	연남동	54	학	4,132	4,13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0	기정	기흥구	연남동	55	학	7,372	7,37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1	기정	기흥구	연남동	56	학	5,078	5,07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2	기정	기흥구	연남동	57-1	학	2,628	2,62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3	기정	기흥구	연남동	57-2	학	469	46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4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	학	516	51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
연번	구분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권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시	동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25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-2	학	463	46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6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-3	임	5,437	5,43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7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-4	임	11,092	11,09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8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-5	임	868	86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29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-6	임	1,387	1,38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0	기정	기흥구	연남동	58-7	임	2,877	2,87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1	기정	기흥구	연남동	59	학	337	33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2	기정	기흥구	연남동	59-1	임	1,755	1,75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3	기정	기흥구	연남동	59-2	임	4,966	4,96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4	기정	기흥구	연남동	60-1	학	8,271	8,27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5	기정	기흥구	연남동	60-2	구	1,345	1,34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6	기정	기흥구	연남동	61-2	학	536	53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7	기정	기흥구	연남동	64-2	임	420	42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8	기정	기흥구	연남동	64-4	구	740	74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39	기정	기흥구	연남동	64-5	임	314	31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0	기정	기흥구	연남동	66-1	임	1,234	1,23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1	기정	기흥구	연남동	69-1	임	622	62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2	기정	기흥구	연남동	73-1	임	2,988	2,98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3	기정	기흥구	연남동	75-1	임	1,089	1,08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4	기정	기흥구	연남동	81	임	350	35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5	기정	기흥구	연남동	81-1	임	309	30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6	기정	기흥구	연남동	81-2	도	3,811	1,30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7	기정	기흥구	연남동	82-2	구	289	28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8	기정	기흥구	연남동	82-3	임	2,714	1,91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49	기정	기흥구	연남동	82-4	임	4,293	4,29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0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	학	7,474	6,17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1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1	임	3,262	3,26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2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3	임	14,607	73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
연번	구분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권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시	동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53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7	임	27,615	2,23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4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8	임	1,158	53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5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9	임	22,186	7,98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6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10	임	2,546	2,54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7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11	임	7,805	7,80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8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13	임	10,653	8,39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59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14	임	4,821	4,82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0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22	임	249	24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1	기정	기흥구	연남동	83-23	임	27,674	27,67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2	기정	기흥구	연남동	88-1	학	798	79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3	기정	기흥구	연남동	89-1	임	4,123	4,12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4	기정	기흥구	연남동	124-1	임	7,689	7,68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5	기정	기흥구	연남동	124-2	임	7,614	7,61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6	기정	기흥구	연남동	124-3	임	1,894	1,89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7	기정	기흥구	연남동	137	학	162	16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8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0-6	도	1,861	1,86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69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2	학	1,349	1,34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98 / 1,349				
								경기도		1,151 / 1,349				
70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2-1	임	1,806	1,80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1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2-2	임	8,186	8,18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2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2-3	도	3,099	3,09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3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3-1	도	3,139	3,13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4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4	학	1,248	1,24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5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4-2	학	45	4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6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5	학	4,433	4,43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7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5-1	임	4,044	4,04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8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9	학	274	27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79	기정	기흥구	연남동	149-2	학	95	9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0	기정	기흥구	연남동	445	구	1,365	1,36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1	기정	기흥구	연남동	446	구	1,934	1,65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
연번	구분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권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시	동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82	기정	기흥구	연남동	448	천	11,249	11,24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3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20-2	임	8,727	8,72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4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21	임	3,669	3,66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5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30	임	176,456	72,57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6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32-5	임	1,156	1,15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7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3-2	임	6,144	6,14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8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4-1	임	19,736	19,73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89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4-2	임	22,937	22,93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0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4-5	임	16,755	16,75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1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5-1	임	529	52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2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6-1	임	1,437	1,43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3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7-1	임	1,342	1,34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4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7-2	임	41	4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5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8-1	임	464	46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6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49	임	6,248	6,24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7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50	임	3,273	3,27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8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51	임	5,157	5,15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99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52	임	7,934	7,93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0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53	임	7,041	7,04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1	기정	기흥구	연남동	산54	임	12,968	12,96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2	기정	기흥구	청덕동	349-1	대	2,185	2,18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3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0	대	853	85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4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1	대	2,185	2,18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5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2	대	1,098	1,09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6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3	대	2,212	2,21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7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4	대	2,724	2,72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8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5	대	1,177	1,17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09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6	대	2,674	2,67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0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7-1	대	2,460	2,46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1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7-2	대	988	98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2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8	대	3,646	3,64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3	기정	기흥구	청덕동	359	대	2,344	2,34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
연번	구분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권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시	동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114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0-1	대	2,641	2,64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5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0-2	대	899	89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6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1-1	대	2,608	2,60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7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1-2	대	2,271	2,27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8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2	대	450	45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19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3-1	대	1,035	1,03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0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3-2	대	863	86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1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4-1	대	942	94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2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4-2	대	2,281	2,28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3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4-3	대	2,066	2,06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4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4-4	대	2,681	2,68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5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5-1	대	1,035	1,03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6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5-2	대	648	64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7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6	대	2,840	2,84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8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7	대	813	81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29	기정	기흥구	청덕동	368	대	1,013	1,01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0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0-1	대	1,956	1,95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1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3	대	197	19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2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4	대	647	64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3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5-1	대	4,208	4,20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4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5-2	대	2,291	2,29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5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5-3	대	473	47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6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5-4	대	364	36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7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5-5	대	302	30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8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6	대	2,972	2,97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39	기정	기흥구	청덕동	377	대	1,375	1,37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0	기정	기흥구	청덕동	380	대	1,141	1,141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1	기정	기흥구	청덕동	381-1	대	1,103	1,103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2	기정	기흥구	청덕동	381-6	대	35	3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3	기정	기흥구	청덕동	397	대	184	18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4	기정	기흥구	청덕동	464-1	구	846	84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5	기정	기흥구	청덕동	464-2	구	814	81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
연번	구분	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권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시	동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146	기정	기흥구	청덕동	471	구	460	46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7	기정	기흥구	청덕동	472	구	245	24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8	기정	기흥구	청덕동	473	구	780	780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49	기정	기흥구	청덕동	474	구	1,408	1,40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0	기정	기흥구	청덕동	475	구	4,772	4,77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1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1-8	임	298	25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2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1-9	임	11,046	11,04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3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1-10	임	11,584	11,58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4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1-11	임	992	99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5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1-12	임	99	9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6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1-13	임	83,034	57,82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7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2	임	3,174	2,64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8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3	임	3,967	3,96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59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39-1	임	1,857	1,85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0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1	임	33,025	33,02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1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2	임	496	49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2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3	임	15,074	15,074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3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4	임	4,959	4,95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4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5	임	496	49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5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6	임	6,645	6,645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6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7	임	9,917	9,917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7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8	임	4,959	4,95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8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9	임	16,562	16,562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69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0-10	임	79,979	79,97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70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1	임	21,719	21,71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71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2-1	임	1,248	1,248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72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3-3	임	349	34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73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3-4	임	1,996	1,996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
174	기정	기흥구	청덕동	산43-5	임	5,209	5,209	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1 / 1				